

□ 정부시책 □

산자부, 에너지기술 시범적용사업 지원대상 확대

-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기술의 현장적용 및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해 오던 에너지절약 시범적용사업을 개편하여 절약 기술 외에도 고효율에너지기기, 청정에너지기술, 자원기술의 상품화까지도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명칭도 에너지기술시범 적용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.
- 또한 지원대상기관도 종전에는 비영리 연구기관 및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부터는 새로운 에너지기술(절약, 청정, 자원)을 보유한 모든 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 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
 -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이 크게 향상된 기자재 생산업체를 우선 지원토록 하였음.
-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IMF 시대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율을 시설비의 70%(종전 평균 50%)까지 지원토록 확대 하였음.

< 에너지절약기술 시험적용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요약 >

1. 개정 사유

- '98에너지절약종합대책 수립('98. 5. 27,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) 및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('98. 11월 확정예정, 산업자원부)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및 신설
 - 시범적용사업 지원대상 확대
 - 지원대상기술의 범위 확대 및 응모 대상 제한 폐지
 -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관련기술개발 사

업 우선 선정

- 중소기업 지원강화(사업비지원을 상향조정)

2. 주요 개정 내용

- 대상기술의 범위 확대
 - 에너지절약기술 → 절약, 청정, 자원기술
- 응모대상기관 제한 폐지
 - 비영리 연구기관 및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→ 대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, 기업 또는 민간

- 평가 위원회 세분화
 - 에너지절약 분야 → 에너지절약, 청정, 자원의 3개 분야
-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관련기술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(신설)
 -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관련기술로서 효율향상이 필요한 기술 우선 선정
- 정부지원 시설비 지원비율 상향조정
 - 사업규모에 따라 40%~70% 이내 → 중소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 이내

3. 기대효과

- '94년 부터 시작된 청정에너지 및 기술 개발사업중 기술개발성과가 우수한 과제 및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민간의 시범적용사업 참여가 기대됨.

《참고》 지원현황

- '94년 부터 '97년까지 15개 과제에 총 74억원(정부 43억원, 민간 31억원)을 투자하여 사업이 종료된 6개 과제는 성공하였으며 현재 상용화 추진중임.

년 도 별		'94	'95	'96	'97	계
과 제 수 (개)		4	4	4	3	15
사 업 비 (백만원)	정 부	807	1,249	1,172	1,117	4,345
	민 간	217	328	1,941	608	3,096
계		1,026	1,577	3,113	1,725	7,441

- '98년에는 공모를 실시한 결과 6개 과제가 응모하여 1개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, 본 지침 개정 후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임.
 - 예산 : 14억원
 - 계속 과제지원 : 1개 과제 5억2천만원
 - 신규 과제지원 : 1개 과제 2억7천만원
 - 재공모 지원분 : 6억천만원